

## 중국의 입법법 개정 동향

### I. 들어가며

중국 내 법률의 법률로 기능을 하면서 입법 행위를 규범화 하고 있는 입법법은 2000년 3월 15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입법법이 통과되었고, 2015년 3월 15일 제12회 전인대 제3차 회의를 통하여 입법법 개정안이 결정(찬성 2761, 반대 81, 기권 33)되었으며, 이번 중국 입법법 개정안을 15년만에 처음으로 개정하여 공포, 시행하였다. 중국 입법역사상 새로운 이정표라 할 수 있겠다. 중국 입법법 개정은 중국의 발전 상황에 맞추어 시대흐름에 뒤처 지지 않으며 시장의 변화에 부합 하고자 한 선택이다. 중국의 입법법 재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3월 15일 전인대 제3차 회의를 통과한 입법법은 2002년 3월 15일 중국 주석령 31호에 의거 하여 공포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14년 8월 25일 전인대 10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입법법에 대해 개정 초안 심의가 제청되었다. 초안

전문 총 28개 조문을 대중에 공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해 10월 2차 초안을 전인대법률위원회가 심의 후, 대중에 공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12월 22일 2차 초안을 전인대상무위원회 제 20차 회의에서 심의 후, 2차 초안 28조문을 35조문으로 세분화하였다.

2015년 2월 12일 시진핑서기 사회로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전인대상무위원회 당조직의 '중국입법법개정안(초안)에 관한 몇 가지 주요문제 요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 후, 입법법개정초안의 완벽한 수정을 명령하였다. 개정초안 수정 후 2015년 3월 8일 제12회 전인대 3차 심의에서 3000명의 인민대표에 입법개정 초안을 설명하였으며, 3월 11일 전인대법률위원회가 대표들에게 개정의견 심의진행을 제청하여, 2015년 3월 15일 개정안 결정이 통과되었다.

## II. 중국 입법법 개정 내용

### 1. 구성

개정 전 중국 입법법은 총 6장 94개 조문이 있었으나 35개 조문이 개정 대상이었으며, 11조문이 늘어난 10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총 6개 조문으로 중국입법활동의 기본의무와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법률은 총 4개 절로 나누어 입법권한 및 입법절차, 법률해석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총 5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행정법규로 총 7개 조문으로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법규를 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총 2개 절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규장에 대하여 총 15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설구(設區)(設区)<sup>1)</sup>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행정구역의 수요에 근거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설구(設區) 시를 포함하여 좀 더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5장 적용과 등록심사는 총 16개 조문으로 “헌법에 상호 저

촉되지 않으면서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규장 순으로 우선권을 규정하고 지방성 법규의 경우, 규모가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을 우선한다고 규정하면서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규장은 공포 후 30일 이내 유관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부칙으로 총 3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개정안 주요 내용

#### (1) 입법의 질적 향상

중국은 2015년을 ‘의법치국’의 전면적 시행을 천명하며 체계적인 법 정비를 추진하였다. ‘의법치국’은 입법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이 관리가 되어 시대 흐름에 부합되어야 한다. 입법법 제1조는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의 입법체도를 건전하게 하며, 입법의 질을 제고(提高)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인도 및 추진역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적 민주를 보장·발전시키고, 전면적 법에 의거한 국가 통치를 추진하며,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1) 設区(설구(設區))=地級市(지급시) 지급 행정구에 속하는 제2급 지방행정단위로 행정지위가 지구(地區, 地區行政專署)와 유사하여 지급시로 불리며 1983년 정식으로 구획술어로 고정되었고, 이전의 성할시(省轄市)를 명칭을 대체하게 되었다.(설구(設區)는 법률상의 용어로 보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 제정 취지에서 입법의 질적 향상과 입법 활동의 추동적 역할 기대와 법에 의거한 국가 통치를 통한 시장 변화와 경제발전에 맞는 입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또한 명확한 심사와 입법공개로 통한 입법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자 제5조는 ‘입법공개 유지’와 제6조는 “경제사회 발전 및 전면적 개혁의 요구에 적응하고자 과학적·합리적으로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 및 국가기관의 권력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법 개혁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보인다.

## (2) 세수법정원칙<sup>2)</sup>

이는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개정안이다. 비록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sup>3)</sup> 1985년에 개혁개방의 수용에 적응하기 위해 세수입법권을 국무원에 일임하는 규정이 있고, 이는 조례 혹은 잠행조례로 세수 징수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입법법 개정 전 18개 세수종목 중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자동차선박세, 이 3가지 세수종목만이 전인대의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 입법법 개정안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거둘 것인지 인민대표를 통해 입법이 결정될 것이며<sup>4)</sup>, 이는 기존 세수법이 전반적으로 재개정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2) 세수법정원칙이라 함은 하나의 세수(稅收)에 관해 세금종류, 납세인, 징수대상, 과세기준, 세율 및 세금징수관리 등 세금기본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제8조 다음의 사항은 오직 법률로만 제정할 수 있다.
  - 국가주권에 관한 사항
  - 각급인민대표대회·인민정부·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설립·조직과 직권
  - 민족구역자치제도·특별행정구제도·기층자치제도
  - 범죄와 형벌
  - 공민의 정치적 권리의 박탈·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 세수의 종류 설립, 세율의 확정 및 세수징수 관리 등 세수기본제도
  - 비국유재산에 대한 징수
  - 민사기본제도
  - 기본경제제도 및 재정·세수·세관·금융과 외국무역의 기본제도
  - 소송과 중재제도
  -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법률로 제정하여야만 하는 기타사항
- 4) 상하이방, <중국2020년까지 '세수법정원칙' 전면시행>, <http://www.shanghai.com/shanghai/news.php?code=&cmode=view&num=43178>.

### (3) 수권결정 강화

국가 입법기관 수권에 근거하여 국무원 또는 지방정부는 입법권을 행사하였다. 기존 수권 시행에 있어, 수권범위에 대한 엄격한 표준과 제한 및 감독절차가 결여되어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입법법은 “수권결정은 수권의 목적, 정황, 범위, 기한 및 피수권기관 수권결정 시행 시 반드시 원칙 등에 준수한다. 또한 수권 기한은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그러나 수권 결정 별도 규정은 제외한다. 피수권기관은 수권 만료 6개월 이전에 수권기관에 수권결정 시행 상황을 보고하며, 동시에 관련법률 제정 의견을 필요로 하는지 제기한다. 수권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 관련 의견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sup>5)</sup> 라고 규정 하고 있다. 수권결정의 정황과 기간 등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수권 시행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권 기한을 명

확히 하고 있어 수권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였다.

### (4) 지방정부 입법권 제정권한 확대

중국은 284개의 시 가운데 49개 시 ‘큰 규모의 도시’<sup>6)</sup>(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경제지구가 설치된 곳, 국무원이 인정한 비교적 큰 시)로 법규 제정권을 한정지어, 많은 중소도시가 지방입법권을 보유하기 위한 큰 규모의 도시 건설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보호, 건설관리, 역사문화보호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 중소도시에 지방입법권이 없어 현실적 법 제정이 불가능하였고, 이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큰 규모의 도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설구(設區)(제2급행정단위)’<sup>7)</sup>로 개정되어, 지방입법권을 2급행정단위 이상의 도시도 보유하게 되어 현

5) 개정 입법법 제10조.

6) 개정 전 입법법 제63조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정황과 실제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큰 규모 도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헌법·법률·행정법규와 당해 성·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 후 시행한다.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요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하여 그 합법성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헌법·법률·행정법규와 당해 성·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으면, 4개월 내에 비준하여야 한다.”

7) 개정 후 입법법 제72조에 따라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정황과 실제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 할 수 있다. 설구(設區)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수요에

실적 법 제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제2행정도시에 맞는 건설 관리, 환경보호, 역사문화보호 등과 같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어, 기존에 산재되던 어려움과 불편함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부문행위를 규범화 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행정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 현실적 지방성 법규 제정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 (5) 규범부서 권한 범위 명확화

‘위에서 정책이 있으면 아래서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下有对策)’<sup>8)</sup>라 함은 “중국에는 국가정책이 있고, 지방정부에는 대책이 있다.”라 하여 정부에서 법이나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지방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을 빗댄 표현이다. 표면상 국가의 법과 정책을 따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입법법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각 부서·위원회·중국인민은행·회계국과 행정 관리 직능을 가진 직속기구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을 근거로 당해 부서의 권한

의 범위 내에서 규장을 제정한다. 부문 규장이 규정하는 사항은 법률 혹은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은 반드시 집행하는 사항에 속하여야 한다.”

제73조에 의하면, “성·자치구·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는 법률·행정법규와 당해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에 근거하여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 규장은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규장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당행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행정관리에 속하는 사항”

위와 같이 기존 규정은 정부부문행위에 대한 정확한 규범화 장치를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입법법 제80조 규정에 따르면, “법률 또는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의 근거가 없을 경우, 부문 규장의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또는 기타 의무의 범위를 확장 할 수 없고, 본 부서의 권리 증가 또는 본 부서의 법정직책을 감소

근거하여 헌법·법률·행정법규와 당해 성·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문화보호 등 방면의 사항의 지방성 법규를 제정 할 수 있고, 법률과 설구(設區) 시 지방성 법규의 사항이 별도의 규정이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 설구(設區) 시의 지방성 법규는 반드시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을 요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하여 그 합법성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헌법·법률·행정법규와 당해 성·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으면, 4개월 내에 비준하여야 한다.

8) 조영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2010. 3. 18.



할 수도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해 “지방입법기관이 규장 제정 시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등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9)</sup> 대표적인 예로 북경이나 상해를 비롯한 중국 내 심각한 교통체증을 내세워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동차 운행제한, 구매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정부부처행위, 지방정부의 입법 행위에 명확한 규범화 제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 (6) 입법 등록심사 강화

이전 입법법 ‘제5장 적용과 등록’에서 없던 ‘심사’가 추가 되어 ‘제5장 적용과 등록 심사’로 개정되면서, 새로운 규정이 추가 되었다. 그래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이 전 항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기관에 심사의견, 연구의견을 제출하며, 제정기관은 의견서에 근거

하여,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진행하고, 심사를 종결한다.<sup>10)</sup>

전국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반드시 규정 요구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제출한 심사 건의·사회단체·기업사업조직 및 공민에 반대한 연구상황을 심사하며, 동시에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sup>11)</sup>

이는 중국이 법 제정에 있어서 현실적 법률과 공평하고 정의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할 수 있겠다.

## (7) 법률해석에 대한 규제

중국에서 법률 해석이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을 포함한 사법기관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운용하는 문제에 관한 해석을 말한다. 법률 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의 경우 ‘해석, 규정, 회답, 결정’ 등 4가지 형식을 취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경우 ‘해석, 규정, 규칙, 의견, 회답’ 등 5가지 형식을 취하며 법적 효력<sup>12)</sup>을 가지고 있다<sup>13)</sup>. 문제는 중국의 법률해석의 경우

9) 개정 입법법 제82조.

10) 개정 입법법 제91조

11) 개정 입법법 제101조.

12) 개정 입법법 제50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3) 전대규,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 사법 14호, 2010년 12월.

실제로 법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의 최고법원이 이에 관한 판결의 지침을 정하여 준다는 것이며,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법률의 해석을 미리하여 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하급심 법원에 통보한다. 이 때문에 법률해석과 관련하여 사법권에 의한 입법권의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에 개정 입법법에서 법률해석이 법적 근거로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심판, 검찰업무 중 구체적 법률 해석은 구체적 법률조문이어야 하며, 동시에 입법의 목적, 원칙 및 본의에 부합하여야 한다. 본 법 제45조 제2항 규정<sup>14)</sup>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해석의 요구 제출 또는 제정, 개정 관련 법률의 의안을 제출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심판, 검찰업무 중 구체적 법률 해석은 반드시 공포 30일 이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을 제외하고 심판기관 및 검찰기관은 구체적 법률 해석을 할 수 없다.”<sup>15)</sup> 라고 규정하면서 “사법해석권은 오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만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Ⅲ. 나가며

중국 입법법 개정안은 많은 부분에서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내세운 의법치국은 입법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이 관리가 되고 그에 맞는 입법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이번 입법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에 벗어날 수 없는 필수 불가분의 선택이라고 생각되며, 많은 개정내용 중 다양한 입법심사와 사회 공개 규정을 내세워 입법의 투명성과 공평하고 공정한 입법을 제고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법체계를 완비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만드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세수법정규칙’의 개정은 앞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 진출 시 많은 부분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향후 중국 정부가 걷는 세금의 종류, 대상, 액수, 방법 등 관련 사항들이 모두 인민대표대회 입법을 통해 결정된다고 하고 있다. 현재 인민대표대회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거나 정부에 의해 정해진 세율은 재조정되거나, 재권한 부여가 필요로 하는 많은 세수 관련 법률 역시 재조정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세목 설정, 세율 확정, 세수 징수관리 등 세수기본체도가 법에 의해서만

14) 법률이 제정된 후 새로운 정황이 출현하여 적용되는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5) 개정 입법법 제104조.

규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있을 세수 변화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이다.

**박 정 현**

(중국북경대외경제무역대학교 법학박사)

#### 참고문헌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全国人民代表大会网, [http://www.npc.gov.cn/npc/dbdhhy/12\\_3/2015-03/18/content\\_1930713.htm](http://www.npc.gov.cn/npc/dbdhhy/12_3/2015-03/18/content_1930713.htm).

상하이방, <중국 2020년까지 '세수법정원칙' 전면시행>, <http://www.shanghaibang.com/shanghai/news.php?code=&mode=view&num=43178>.

조영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2010. 3. 18.

전대규,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 사법 14호, 2010. 12.



## 〈부록〉 중국 입법법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장 총칙	
<p><b>제1조</b>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의 입법제도를 건전하게 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수립·개선하여 사회주의적 민주를 보장·발전시키고, 법에 의거한 국가 통치를 추진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p>	<p><b>제1조</b> 입법활동을 규범화 하고, 국가의 입법제도를 건전하게 하며, <b>입법의 질을 제고(提高)하여</b>,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여, <b>입법의 인도 및 추진역할을 발휘하여</b>, 사회주의적 민주를 보장·발전시키고, <b>전면적</b> 법에 의거한 국가 통치를 추진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p>
<p><b>제5조</b> 입법은 인민의 의지를 실현하고, 사회주의적 민주를 발양하며, 인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입법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p>	<p><b>제5조</b> 입법은 인민의 의지를 실현하고, 사회주의적 민주를 발양하며, <b>입법공개를 유지하여</b> 인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입법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p>
<p><b>제6조</b> 입법은 현실에 기초하여 과학적·합리적으로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 및 국가기관의 권력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p>	<p><b>제6조</b> 입법은 현실에 기초하여, <b>경제사회 발전 및 전면적 심화개혁의 요구에 적응하여</b>, 과학적·합리적으로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 및 국가기관의 권력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p> <p><b>법률규범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 집행되어야 한다.</b></p>
제2장 법률	
제1절 입법권한	
<p><b>제8조</b> 다음의 사항은 오직 법률로만 제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주권에 관한 사항</li> <li>(2) 각급인민대표대회·인민정부·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설립·조직과 직권</li> <li>(3) 민족구역자치제도·특별행정구제도·기층자치제도</li> <li>(4) 범죄와 형벌</li> <li>(5) 공민의 정치적 권리의 박탈·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li> <li>(6) 비국유재산에 대한 징수</li> <li>(7) 민사기본제도</li> <li>(8) 기본경제제도 및 재정·세수·세관·금융과 외국무역의 기본제도</li> <li>(9) 소송과 중재제도</li> <li>(10)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법률로 제정하여야만 하는 기타 사항</li> </ol>	<p><b>제8조</b> 다음의 사항은 오직 법률로만 제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주권에 관한 사항</li> <li>(2) 각급인민대표대회·인민정부·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설립·조직과 직권</li> <li>(3) 민족구역자치제도·특별행정구제도·기층자치제도</li> <li>(4) 범죄와 형벌</li> <li>(5) 공민의 정치적 권리의 박탈·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li> <li>(6) <b>세수의 종류 설립, 세율의 확정 및 세수징수관리 등 세수기본제도</b></li> <li>(7) 비국유재산에 대한 징수</li> <li>(8) 민사기본제도</li> <li>(9) 기본경제제도 및 재정·세수·세관·금융과 외국무역의 기본제도</li> <li>(10) 소송과 중재제도</li> <li>(11)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법률로 제정하여야만 하는 기타 사항</li> </ol>

<p><b>제10조</b> 수권결정은 수권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피수권 기관은 수권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그 권력을 엄격히 행사하여야 한다. 피수권기관은 그 권력을 기타 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p>	<p><b>제10조</b> 수권결정은 수권의 목적, 상황, 범위, 기한 및 피수권 기관 수권결정 시행 시 반드시 원칙 등에 준수 한다. 수권 기한은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그러나 수권결정 별도 규정은 제외한다. 피수권 기관은 수권 만료 6개월 이전에 수권기관에 수권결정 시행 상황을 보고하며, 동시에 관련법률 제정 의견을 필요로 하는지 제기한다. 수권 재위임을 필요로 할 경우, 관련 의견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p>
	<p><b>제12조</b> 피수권기관은 수권결정에 따라 그 권력을 엄격히 행사할 권력을 수여 받는다. 피수권기관은 수여 받은 권력을 기타 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p>
	<p><b>제13조</b>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개혁발전 필요에 근거하여, 행정관리 등 영역에서 특정 사항의 수권 결정을 일정 기한 내 일정부분에 대하여 일시적 조정 또는 법률적용 부분규정을 일시적으로 정지 할 수 있다.</p>
<p>제2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절차</p>	
<p><b>제14조</b>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는 먼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상무위원회가 본법 제2장 제3절에 규정된 관련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의 제청을 결정하며, 상무위원회가 대회 전체회의에서 설명을 하거나 제안자가 대회전체회의에서 설명을 한다.</p>	<p><b>제16조</b>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는 먼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상무위원회가 본법 제2장 제3절에 규정된 관련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의 제청을 결정하며, 상무위원회가 대회 전체회의에서 설명을 하거나 제안자가 대회전체회의에서 설명을 한다. 상무위원회는 전항 규정 심의 법률안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구하며, 동시에 유사사항에는 반려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입법연구연구 업무를 진행하며 관련 인민대표대회대표를 회의 참관을 요청한다.</p>
<p>제3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절차</p>	
<p><b>제26조</b>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에 법률안 초안을 상무위원회 구성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p>	<p><b>제28조</b>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에 법률안 초안을 상무위원회 구성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상무위원회 법률안 심의 회의 시, 관련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를 회의 참관을 요청한다.</p>
<p><b>제28조</b>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각 방면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경우, 두 차례의 상무위원회회의의 심의</p>	<p><b>제30조</b>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각 방면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경우, 두 차례의 상무위원회회의의 심</p>

제3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절차

를 거친 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 방면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경우, 한 차례의 상무위원회회의의 심의를 거치며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34조**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법률위원회·논증회·청문회 등 각종의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사무기구는 법률초안을 유관기관·조직과 전문가에게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정리한 후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발송하며, 동시에 필요한 경우 상무위원회회의에도 배포한다.

**제35조**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중요한 법률안은 위원장회의의 결정을 거쳐 법률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각 기관 조직과 공민이 제출한 의견은 상무위원회 사무기구에 발송한다.

**제40조** 법률초안 수정안은 상무위원회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률위원회가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심의 의견에 근거하여 수정을

의를 거친 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조정사항은 단일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 방면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경우, 한 차례의 상무위원회회의의 심의를 거치며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36조**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법률위원회·논증회·청문회 등 각종의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법률안 관련 전문적 중대문제 관련 가능성 평가를 필요로 하며, 반드시 논증회·관련 전문가 의견·부서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등 방면의 의견을 수렴한다. 논증상황은 반드시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법률안 관련 문제에 의견이 중대하게 상이하거나 이해관계 조정이 중대하게 연관되었을 경우, 청문 진행을 필요로 하며, 반드시 논증회를 개최하며, 관련 (최)하위부서 및 단체대표, 부서, 민간단체, 전문가,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 및 사회 관련 방면의 의견을 수렴한다. 논증상황은 반드시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상무위원회 사무기구는 법률초안을 관련 영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 지방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및 유관부서, 조직과 전문가에게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정리한 후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발송하며, 동시에 필요한 경우 상무위원회회의에도 배포한다.

**제37조**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반드시 상무위원회회의 이후 법률 초안 및 개정설명 등을 사회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위원장회의에서 비공개 결정은 제외한다. 사회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을 넘기지 않는다. 의견수렴 상황은 반드시 사회에 통보한다.

**제39조** 상무위원회회의의 심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제청할 경우, 법률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이전에 제기하며, 상무위원회 담당 부서는 법률초안 중 주요제도 규범의 실효성, 법률실효시간, 법률시행의 사회적 효과와 문제점 발생 가능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상황은 법률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중에 설명을 포함한다.

**제41조** 법률초안 수정안은 상무위원회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률위원회가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심의 의견에 근거하여 수정을

<p>진행하고, 법률초안 표결안을 제출하여 위원장회의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을 제청하여 상무위원회 전체구성원의 과반수로 통과한다.</p>	<p>진행하고, 법률초안 표결안을 제출하여 위원장회의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을 제청하여 상무위원회 전체구성원의 과반수로 통과한다.</p> <p>법률초안 표결은 상무위원회회의의 표결 전에 부치며, 위원장회의는 상무위원회회의의 심의 상황에 근거하여, 개별의견 이견이 큰 중요 조항은 상무위원회에 단독표결 결정을 제정할 수 있다.</p> <p>단독표결의 조항은 상무위원회 회의 표결을 통한 후, 위원장회의에서 단독표결 상황에 근거하여 법률초안을 표결에 부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표결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며,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좀 더 나은 심의를 진행한다.</p>
	<p>제43조 부서간 법률 중 중복항목의 각 조항을 통합하여 법률안을 제기하여, 위원장회의를 통하여 통합 또는 분할에 대하여 표결에 부친다.</p>
<p>제5절 기타 규정</p>	
	<p>제5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입법업무의 조직 조화를 강화하여 입법업무 주도작용을 발휘하게 한다.</p>
	<p>제5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하여 입법기획, 연간입법계획 등의 형식을 강화하여 입법업무에 동등하게 안배한다. 입법계획 및 연간입법계획 편성은 반드시 연구대표의견 및 건의를 확인하여 광범위한 의견 수집, 과학적 논증·평가, 경제사회 발전 및 민주법치 건설 필요성에 근거하여 명확한 입법 항목, 입법 적시성, 정확성 및 체계성을 제고한다. 입법기획 및 연간입법계획은 위원장 회의 통과와 동시에 사회에 공개한다.</p> <p>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입법기획 수립과 연간입법계획 편성 책임과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요구에 의거 입법기획과 연간입법계획 실현을 촉구 한다.</p>
	<p>제53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유관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관련 방면의 법률초안 작업 이전에 참여 한다. 종합성, 전반성, 기초성의 중요법률초안은 유관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관 조직에서 기초한다.</p> <p>전문성이 강한 법률초안은 관련 영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초업무에 참여하게 하거나, 전문가 위탁, 관련 연구기관, 사회기구에서 기초한다.</p>

제5절 기타 규정	
<p><b>제48조</b> 법률안 제출은 반드시 법률 초안원문과 그 설명을 동시에 제출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한다. 법률초안의 설명은 당해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b>제54조</b> 법률안 제출은 반드시 법률 초안원문과 그 설명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개정법률은 반드시 개정 전·후의 대조본을 제출한다. 법률초안의 설명은 반드시 당해 법률제정의 필요성, 실행가능성과 주요내용, 초안과정 중 중대한 의견상충의 의견조율 처리 상황을 포함한다.</p>
<p><b>제53조</b> 법률의 수정과 폐지절차는 본 장의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법률의 일부 조문이 수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법률원본을 공포하여야 한다.</p>	<p><b>제59조</b> 법률의 수정과 폐지절차는 본 장의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대상 법률은 반드시 새로운 법률원본을 공개한다. 폐지대상 법률은 기타 법률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을 제외하고 국가주석 지시 후 공개한다.</p>
<p><b>제54조</b> 법률은 내용의 필요에 따라, 편·장·절·조·관·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편·장·절·조의 차례는 중국어 숫자를 사용하여 차례대로 기술하고, 관의 순번은 매기지 아니 하며, 항의 차례는 중국어 숫자를 사용하고 괄호를 더하여 기술하고, 목의 차례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차례대로 기술한다. 법률표제의 주석은 재정기관과 통과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p>	<p><b>제60조</b> 법률초안과 기타 법률 상관규정이 불일치 할 경우, 제시인은 반드시 처리의견을 포함한 설명을 제출하고, 필요 시 개정 또는 폐기 기타 법률 상관규정 의안을 동시에 제출한다. 법률위원회와 유관전문위원회의 법률안 심의 시, 개정 또는 폐기 기타법률 상관규정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처리 의견을 제출한다.</p>
<p><b>제54조</b> 법률은 내용의 필요에 따라, 편·장·절·조·관·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편·장·절·조의 차례는 중국어 숫자를 사용하여 차례대로 기술하고, 관의 순번은 매기지 아니 하며, 항의 차례는 중국어 숫자를 사용하고 괄호를 더하여 기술하고, 목의 차례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차례대로 기술한다. 법률표제의 주석은 재정기관과 통과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을 통한 법률은 반드시 제정기관, 개정일자를 명확히 기록한다.</p>	<p><b>제61조</b> 법률은 내용의 필요에 따라, 편·장·절·조·관·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편·장·절·조의 차례는 중국어 숫자를 사용하여 차례대로 기술하고, 관의 순번은 매기지 아니 하며, 항의 차례는 중국어 숫자를 사용하고 괄호를 더하여 기술하고, 목의 차례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차례대로 기술한다. 법률표제의 주석은 재정기관과 통과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을 통한 법률은 반드시 제정기관, 개정일자를 명확히 기록한다.</p>
<p><b>제62조</b> 법률규정의 명확한 요구로 유관국가기관이 전문사항과 결합한 구체적 규정을 제기하며, 유관국가기관은 반드시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규정을 제기하고, 법률과 결합한 구체적 규정 제정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우선한다. 유관국가기관이 기한내에 결합한 구체적 규정을 제기하지 못할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황을 설명한다.</p>	<p><b>제62조</b> 법률규정의 명확한 요구로 유관국가기관이 전문사항과 결합한 구체적 규정을 제기하며, 유관국가기관은 반드시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규정을 제기하고, 법률과 결합한 구체적 규정 제정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우선한다. 유관국가기관이 기한내에 결합한 구체적 규정을 제기하지 못할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황을 설명한다.</p>
<p><b>제63조</b> 전국인민대표대회 유관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의 조직이 관련 법률 또는 법률 중 관련규정 입법 후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평가상황은 반드시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p>	<p><b>제63조</b> 전국인민대표대회 유관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의 조직이 관련 법률 또는 법률 중 관련규정 입법 후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평가상황은 반드시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p>

제3장 행정법규

**제57조**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기초한다. 국무원 유관부서가 행정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원에 입안을 서면으로 보고·요청하여야 한다.

**제66조** 국무원 법제기관은 반드시 국가중앙부서에 근거하여 국무원 연간입법계획을 작성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국무원 연간입법계획 중 법률항목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기획과 연간입법계획에 상응하여야 한다. 국무원 법제기관은 국무원 각 부서 입법계획 실시현황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하며, 조직 협의와 감독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무원 유관부서가 행정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에 입안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 행정법규는 기초과정 중에 유관기관·조직과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야 한다. 의견청취는 좌담회·논증회·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제67조** 행정법규는 국무원 유관부서 또는 국무원법제기관이 구체적인 기초 책임을 지며, 주요행정관리의 법률, 행정법규초안은 국무원 법제기관조직이 기초한다. 행정법규는 기초과정 중에 유관기관·조직·인민대표대회대표와 사회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야 한다. 의견청취는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행정법규 반드시 사회 공포, 의견수렴을 기초로 하되, 국무원이 정한 비공개결정은 제외한다.

**제61조** 행정법규는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공포한다.

**제70조** 행정법규는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공포한다. 국방건설 관련 행정법규는 국무원총리,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서명하고 공포한다.

**제62조** 행정법규가 서명·공포된 후, 즉시 국무원 공보와 전국적 범위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국무원 공보에 게재된 행정법규원본을 표준 원본으로 한다.

**제71조** 행정법규 서명·공포 후, 즉시 국무원 공보와 중국정부법제소식사이트 및 전국적 범위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국무원 공보에 게재된 행정법규원본을 표준으로 한다.

제4장 지방성 법규·자치조례와 단행조례·규장

제1절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제63조**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정황과 실제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헌법·법률·행정법규와 당해 성·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방성

**제72조**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정황과 실제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설구(設區)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헌법·법률·행정법규와 당해 성·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는



제4장 지방성 법규 ·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 규장

제1절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 후 시행한다.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요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하여 그 합법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헌법·법률·행정법규와 당해 성·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으면, 4개월 내에 비준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요청한 비교적 큰 시의 지방성 법규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할 시 그 당해 성·자치구의 인민정부의 규장과 상호 저촉되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법에서 말하는 비교적 큰 시는 성·자치구의 인민정부소재지의 시·경제특구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를 가리킨다.

다는 전제 하에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문화 보호 등 방면의 사항의 지방성 법규를 제정 할 수 있고, 법률과 설구(設區) 시 지방성 법규의 사항이 별도의 규정이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 설구(設區) 시의 지방성법규는 반드시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요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하여 그 합법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헌법·법률·행정법규와 당해 성·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으면, 4개월 내에 비준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요청한 설구(設區) 시의 지방성 법규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할 시 그 당해 성·자치구의 인민정부의 규장과 상호 저촉되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의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경제특구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이미 비준한 비교적 큰 시를 제외하고, 기타 설구(設區) 시의 지방성 법규 제정의 구체적 순서와 시작 시간은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당해 성·자치구 관할의 설구(設區) 시의 인구 수, 지역면적, 경제사회발전 상황 및 입법요구, 입법능력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제고하여 확정하며,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등록한다.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본 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설구(設區) 시의 지방성법규에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치주가 지방성 법규 제정의 구체적 순서와 시간은 전항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성·자치구의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경제특구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이미 비준한 비교적 큰 시의 이미 제정된 지방성 법규는 본 조 제2항 규정 사항 범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제64조** 지방성 법규는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 (1)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 사항
- (2) 지방성 사무에 속하여 지방성 법규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국

**제73조** 지방성 법규는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 (1)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 사항
- (2) 지방성 사무에 속하여 지방성 법규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국

가 법률 혹은 행정법규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경우, 성·자치구·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는 그 지방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를 근거로 먼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국가가 제정한 법률 혹은 행정법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지방성 법규의 법률 혹은 행정법규와 상호 저촉되는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제정기관은 즉시 수정 혹은 폐지하여야 한다.

가 법률 혹은 행정법규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경우, 성·자치구·직할시와 **설구(設區) 시, 자치주**는 그 지방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를 근거로 먼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국가가 제정한 법률 혹은 행정법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지방성 법규의 법률 혹은 행정법규와 상호 저촉되는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제정기관은 즉시 수정 혹은 폐지하여야 한다.

**설구(設區) 시, 자치주**는 본조 제1항, 제2항 지방성 법규 제정에 근거하여 본법 제72조 제2항 규정 사항을 제한한다.

지방성법규 제정에서 상위법에 이미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중복 규정하지 않는다.

제2절 규장

**제71조** 국무원 각 부서·위원회·중국인민은행·회계국과 행정 관리 직능을 가진 직속기구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을 근거로 당해 부서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장을 제정한다.

부문 규장이 규정하는 사항은 법률 혹은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은 반드시 집행하는 사항에 속하여야 한다.

**제80조** 국무원 각 부서·위원회·중국인민은행·회계국과 행정 관리 직능을 가진 직속기구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을 근거로 당해 부서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장을 제정한다.

부문 규장이 규정하는 사항은 법률 혹은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은 반드시 집행하는 사항에 속하여야 한다.

**제73조** 성·자치구·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는 법률·행정법규와 당해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에 근거하여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 규장은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 (1)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규장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 (2) 당행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행정관리에 속하는 사항

**제82조** 성·자치구·직할시와 **설구(設區) 시·자치주**의 인민정부는 법률·행정법규와 당해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에 근거하여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 규장은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 (1)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규장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 (2) 당행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행정관리에 속하는 사항

**설구(設區) 시·자치주**의 인민정부는 본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정부규장을 제정하고, 도시와 농촌의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문화보호 등의 방면의 사항을 제한한다. 이미 제정된 지방정부 규장은 위 사항범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성·자치구의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경제특구 소재지의 시 및 국무원이 이미 비준한 비교적 큰 시를 제외하고, 기타 **설구(設區)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가 규장 제정 시작 시간과 당행 성, 자치구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당행 시, 자치주의 지방성법규의 제정시간과 동일하게 맞춘다.

지방성 법규 제정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행정관리의 절박한 요구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정부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절 규장

규장 시행 만2년을 충족한 시행 규장의 지속적 필요요구에 의해 규정의 행정조치는 반드시 당행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 지방성법규제정에 제청한다.  
 법률·행정법규·지방성법규의 근거가 없을 경우, 지방정부 규장은 공민·법인과 기타조직원리 축소 또는 기타의무의 규범을 확장할 수 없다.

제5장 적용과 등록 심사

**제89조** 행정법규·지방성 법규·자치조례와 단행조례·규장은 공포 후 30일 내에 아래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1) 행정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안건으로 등록한다.
- (2)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등록하고,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고 안건으로 등록한다.
- (3) 자치주·자치현이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고 안건으로 등록한다.
- (4) 부문규장과 지방정부규장은 국무원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지방정부규장은 동시에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장은 동시에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5) 수권에 근거하여 제정한 법규는 수권결정 규정의 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89조** 행정법규·지방성 법규·자치조례와 단행조례·규장은 공포 후 30일 내에 아래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1) 행정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안건으로 등록한다.
- (2)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등록하고, **설구(設區)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고 안건으로 등록한다.
- (3) 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고 안건으로 등록한다.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상부 등록 시,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의 변동상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 (4) 부문규장과 지방정부규장은 국무원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지방정부규장은 동시에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설구(設區)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장은 동시에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5) 수권에 근거하여 제정한 법규는 수권결정 규정의 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경제특구법규를 상부 등록 시,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의 변동상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9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심사 중에 행정법규·지방성법규·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헌법 법률과 상호 저촉된다고 여기는 경우 제정기관에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제9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심사, 연구 중에 행정법규·지방성법규·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헌법 법률과 상호 저촉된다고 여기는 경우 제정기관에 서면

있고 또한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가 연합심사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정기관이 회의에 출석하여 정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제정기관에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정기관은 2개월 내에 연구하여 수정 여부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반려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사에서 행정법규·지방성 법규·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헌법 혹은 법률과 상호 저촉됨에도 제정기관이 수정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 위원장회의에 서면 심사의견과 폐지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장회의에서 상무위원회회의에 제청하여 심의 결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으로 심사의견, **연구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또한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업무기관**이 연합심사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정기관이 회의에 출석하여 정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제정기관에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정기관은 2개월 내에 연구하여 수정 여부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에 반려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관련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이 전 항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기관에 심사의견, 연구의견을 제출하며, 제정기관은 의견서에 근거하여,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진행하고, 심사를 종결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와 관련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의 심사, 연구에서 행정법규·지방성 법규·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헌법 혹은 법률과 상호 저촉됨에도 제정기관이 수정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 위원장회의에 서면 심사의견과 폐지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장회의에서 상무위원회회의에 제청하여 심의 결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10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반드시 규정 요구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제출한 심사 건의·사회단체·기업사업조직 및 공민에 반려한 연구상황을 심사하며, 동시에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104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심판, 검찰업무 중 구체적 법률 해석은 구체적 법률조문이어야 하며, 동시에 입법의 목적, 원칙 및 본의에 부합하여야 한다. 본 법 제45조 제2항 규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해석의 요구 제출 또는 제정, 개정 관련 법률의 의안을 제출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심판, 검찰업무 중 구체적 법률 해석은 반드시 공포 30일 이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을 제외하고 심판기관 및 검찰기관은 구체적 법률 해석을 할 수 없다.